

국제교류위원회 규정

제정 : 2008. 06. 26.

개정 : 2015. 06. 05.

담당 : 국제교류팀(950-5403)

----- 목 차 -----			
제1조(목적)	제2조(기능)	제3조(구성)	제4조(위원의 임기)
제5조(회의소집과 의결)	제6조(회의록)	제7조(시행세칙)	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의 국제교류 지원 및 협력관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5.02.06)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
2. 국제교류와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
3. 대학 및 부설연구기관의 국제교류협정 등에 관한 사항
4. 해외유학 및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
5. 국제협력연구에 관한 사항
6. 자매결연 사업추진 및 교류에 관한 사항
7. 외국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
8. 기타 국제교류 자문 및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장은 행정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2015.06.05)
 ② 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하고, 위원회의 간사 1인을 둔다.(개정2015.02.06)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5조(회의소집과 의결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,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6조(회의록) 위원회는 매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, 보관하여야 하며, 그 회의록은 위원장 및 출석위원 2/3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.

제7조(시행세칙)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내규를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8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5년 06월 05일부터 시행한다.